
제2기 제1차 전국위원회

2026년 10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순서

14 : 00 ~	모두발언
14 : 10 ~	제1차 전국위원회 회의

회의 및 자료집 순서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진행요원 지정

회순통과

안건 사항

1. 주요 당직자 인준의 건
2. 시도당 조직 재정비 계획의 건
3.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승인에 관한 당규 개정의 건
4.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당규 개정의 건

보고 사항

1. 제2기 사민당 사업계획 수립 과정 보고
2. 사회민주당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과 주요 계획



전국위원 명단

구분	명단
당대표	송치용
원내대표	한창민
최고위원	배준호 김보경
광역 시도당위원장	박대곤 최영규 (배준호) (김보경) 박형규 (*지역 가나다순)
사무총장	
권역	전국위원
부산경상(2)	국민수 채영민
서울(2)	고석균 박찬빈
인천(2)	강현구 박기훈
중부강원(5)	김숙영 김형연 박인혁 신희정 정도영
호남제주(2)	박봉리 양윤찬
합계	20명

안건 사항

1. 주요 당직자 인준의 건
2. 시도당 조직 재정비 계획의 건
3.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승인에 관한 당규 개정의 건
4.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당규 개정의 건

보고 사항

1. 제2기 사민당 사업계획 수립 과정 보고
2. 사회민주당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과 주요 계획

[안건 1] 주요 당직자 인준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따라 다음의 당직자를 인준해주시요

1. 관련 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9. 주요 집행기구의 장 인준

제5장 집행기구

제19조(정책위원회)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

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6. 7. 29.>

제36조(윤리위원회)

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한다. <신설 2026. 7. 29.>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재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개정 2026. 7. 29.>

2. 인준(안)

구분	이름	약력
정책위의장	김보경	1기 혁신진보위원장 현) 최고위원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	송명호	1기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전교탁	1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 중앙당 윤리위원장: 황일진 (2026. 8. 3. 인준·임명, 임기 2028. 8. 2.까지)은 당규 제8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기 중에 있어 별도 인준 없이 재임을 확인함.

[안건 2] 시도당 조직 재정비 계획의 건을 의결해주십시오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시도당 조직 재정비 계획을 의결해주십시오.

1. 관련 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2. 취지

- 사민당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도당 구성이 크게 달라지는 등 지역 조직의 변화가 심해, 현황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함.
- 신임 2기 지도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도당의 의견을 2기 사민당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 시도당별 조직 재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당원배가 사업을 통해 당조직 확대의 목표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전국위원은 당헌에 따라 소통과 보고의 의무가 있음. 또한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인 바, 전국위원들의 활동을 높여 각 시도당 당원 참여와 소속감을 제고하고자 함.
- 현재 구체적 시행세칙이 없는 당원명부 관리 및 시도당 창준위 운영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시도당 재정비 계획

- 1) 연내 각 시도당 조직 재정비 계획안 제출
- 2) 연내 주요 활동가 및 당원교육 시스템 마련
- 3) 시도당 당원명부 관리, 시도당 창준위 운영과 관련된 시행세칙 마련

[안건 3]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승인에 관한 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당규 제1호, 제6호를 개정해주시요

1. 관련 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2. 취지

-현행 당규는 시도당 창당 승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준위의 결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창준위가 당의 이름으로 활동할 근거가 불분명함. 이에 창준위 결성을 전국위원회 승인 사항으로 정하여, 대의기구의 승인을 받은 조직이 당의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함.

-특히 창준위는 입당원서를 접수하는 창구로서, 당원의 권리와 당적 관리가 걸려 있는 만큼 그 지위와 책임이 규정으로 분명히 정해져야 함.

-아울러 시도당 창준위는 중앙당 창준위와 달리 정당법상 활동 기한(6개월)이 없어, 창당하지 못한 채로도 소멸하지 않음. 미창당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앙당이 창준위와 협업하여 창당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현재 근거가 없는 당의 지원을 규정으로 마련하여 미창당 지역의 조직 준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함.

3. 당규 개정안

당규 제1호(당원)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제6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본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④ 본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다만, 해당 광역시·도당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⑤ 해외 거주 당원은 중앙당에 소속한다.	⑤ (현행과 같음)

부칙 <2026. . . 제3호>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6호(지역조직)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제2조(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당준비위원회"라 한다)의 결성 승인은 전국위원회가 한다.
<신설>	⑤ 발기인대회를 거쳐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결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무총국에 제출하고, 사무총국은 이를 취합·검토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신설>	⑥ 당대표는 제⑤항의 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국위원회에 결성 승인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⑦ 전국위원회는 결성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제4장 보칙
<신설>	제12조 (시행세칙)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승인에 필요한 자료, 업무 범위, 운영 지원 등 본 당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와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6. . . 제3호>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규 시행 당시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시행세칙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제2조 제⑤항의 자료를 사무총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같은 조 제⑥항과 제⑦항에 따른다.

[안건 4]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당규 제1호 제9호를 개정해주시요.

1. 관련 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2.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원내정당들에게 선출직·당직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당규에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026년 8월에는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에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할 것을 추가로 권고함.
- 우리 당은 기본교육 이수 의무와 미이수 시 직권정지 규정을 이미 두고 있으나, 교육 내용에 인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본교육 필수 내용에 인권을 명시하고(당규 제1호 제14조), 공직후보자 심사기준에 인권교육 이력을 반영함(당규 제9호 제18조).

3. 당규 개정안

당규 제1호(당원)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당원교육)	제14조(당원교육)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연수원은 기본교육에 강령, 정당론 등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계획하며, 선출직 당직·공직자, 전국위원회의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되는 임명직 당직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상근당직자, 지역위원회 추천·임명직 당직자, 보좌직원 은 당해 연도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원은 기본교육에 강령, 정당론, 인권 등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계획하며, 선출직 당직·공직자, 전국위원회의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되는 임명직 당직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지역위원회 추천·임명직 당직자, 보좌직원은 당해 연도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당규 제1호 부칙 <2026. . . 제3호>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4조 제②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기본교육부터 적용한다.

당규 제9호(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8조(심사기준 등)	제18조(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인권교육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당규 제9호 부칙 <2026. . . 제4호>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8조 제①항의 개정규정은 이 당규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제2기 사회민주당은 느슨해진 당 내부의 결합력을 강화하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기 지도부는 2028년 총선을 이끌어야 하나, 현재 당의 지지도가 낮고 정치개혁 등 정세가 매우 유동적임. 따라서 기본 토대를 재구축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2026년을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2026년에는 주요 계획의 비전과 로드맵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각 시도당과 당원, 전국위원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뉴사민당>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2기 사민당 기본 방향

□ 비전

“색깔을 분명하게”_시대에 맞는 진보정치로 리셋

1. 불분명하고 느슨한 사민당의 정치적 포지션 강화 : 3.9.2 노선 +청.무.지+현대적 진보노선
2. 정치조직으로서의 정당 정체성 강화 : 당의 주요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내외적 정치토론 및 소통 강화
3. ‘시민-연대조직-당원-활동가-정치인’ 선순환 조직화 시스템 구축 : 대외적 네트워크와 내부적 역량 강화 시스템을 결합
4. 비전 공론화 : 제2기 기본 방향을 시도당·당원·전국위원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뉴 사민당> 비전(안) 마련

□ 로드맵

1. 리빌딩 : 빠르고 과감한 쇄신 2026. 10.~2026. 12.

- 1) 지도체제 쇄신 : 원톱 리더십에서 어벤져스 리더십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전국위원장까지, 당내 다양한 리더십이 작동하도록 권한과 책임 강화
- 2) 정당가치 쇄신 : 진영 대결(진보-보수)이 아닌 생활밀착형 가치 발굴. 미래지향적 가치 및 진보정당 미개척 지대 선점.

3) 조직운영 쇄신 : 슬림한 정당 운영 + 당활동가 역량 강화 집중 + 규율이 분명한 정당 운영 + 시상, 인정 문화 강화

2. 리브랜딩 : 새로운 사민당 2027. 1.~2027. 6.

1) 뉴사민당 비전 발표

2) 사민당 뉴플랫폼 운영

3) 당원교육 시스템 및 시민아카데미 발족

3. 이후 : 성과 검수 과정을 거쳐 2028년 총선 대비 로드맵 재조정

보고 2

사회민주당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과 주요 계획

(*의원실 작성 중)